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점사업자로 보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II. 심사경과

- 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2025. 4. 17.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성준의원 등 170

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2070998호)
제출¹⁾)

-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 4. 17.)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소관위 심사기간: 2025. 10. 13.까지)
-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2025. 10. 1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간주(체계자구 심사기간: 2026. 1. 12.까지)

Ⅲ. 검토의견

1. 가맹지역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의제(안 제2조의2 신설)

- 안 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²⁾, 제12조의5(보

1)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지만, 정부·여당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 재발의되었으나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내란종식과 시급한 민생상황을 고려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의안번호 제2207098호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동의이유 중에서 발췌)

2)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복조치의 금지)³⁾,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⁴⁾,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⁵⁾, 제33조(시정조치)⁶⁾, 제34조(시정권고)⁷⁾, 제35조(과징금)⁸⁾, 제37조의2(손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가맹사업법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6)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해배상책임)9), 제41조제2항(벌칙)10), 제42조(양벌규정)11), 제44조(고발)12)]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 **가맹사업법 제34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8)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가맹지역본부”에 적용할 때에 “가맹사업자”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① 개정안은 안 제2조의2를 제1장 총칙의 정의 규정(제2조)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들을 규정하는 총칙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② 가맹지역 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 모집 등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¹³⁾ 비록 가맹본부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10) 가맹사업법 제41조(벌칙)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이하 생략)

11) 가맹사업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①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13)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하나, 가맹본부의 업무대행자 역할 수행이 기본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그 성질상 차이를 고려할 때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점사업자로 단순 의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법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안 제2조의2에서 열거된 규정 중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등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자’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① 개정안 제2조의2 중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및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에 맞게, 제1장(총칙)이 아닌 제3장(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규정들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準用)¹⁴⁾하도록 하며,¹⁵⁾ ②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

14) ‘준용’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년, 794쪽)에서는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15) 개정안 제2조의2의 내용은 본 대안에 의하여 폐기된 민병덕의원안(의안번호 제2120211호)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인데, 민병덕의원안은 ‘준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

현행	민병덕의원안(제2120211호)
<신설>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의 거래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조의2(손해배상책임) 및 제41조제2항(벌칙)에 관하여는, 이를 가맹 지역본부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각 해당 조문에서 가맹 지역본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¹⁶⁾

＜ 수 정 의 건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신 설＞	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신 설＞	＜삭 제＞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16) 제33조(시정조치) 및 제41조제2항(벌칙)을 위와 같이 수정할 경우, 제34조(시정권고), 제42조(양벌규정) 및 제44조(고발)은 수정의 필요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면 됨.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33조(시정조치) ①-----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

-----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

[illegible]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제12조 제1항 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제12조의5(제15조의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여 <u>가맹점사업자</u>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3. (생략) ③ ~ ⑤ (생략)	<u>포함한다</u>)를 위반하여 <u>가맹점사업자(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5 위반의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를 말한다)</u>----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 거래조건 협의 의무화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제14조의2제1항)¹⁷⁾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제14조의2제2항)¹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안 제14조의3 신설),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안 제14조의2제3항), 대표성을 확보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실질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①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대표성을 확보

17)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8)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만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미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② 거래조건 협의 요청 주체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을 중복하여 규정하면서도 그 표현에 차이가 있으며,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체계적 관리 및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등록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할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등록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③ 협의 및 등록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절차, 방법 및 등록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④ 변경등록 해태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점(안 제14조의3제4항제4호)에서 변경등록 기한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규정은 현행대로 두면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 규정을 따로 신설하도록 하고,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을 거래조건 협의 요청 주체 요건에 맞춰 수정하며, 등록 창구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협의 및 등록에 필요한 절차 등과 변경등록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
시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등록기관 간 관할이 불분명하여 중복 등록 우려가 있다는 점, 일부 지자체 외에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집행조직이 없는 점, 등록기관별로 판단 기준이 상이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수 정 의 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는</u>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 ----- ----- ----- ----- <u>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u> ----- ----- ----- ----- -----.	② (<u>현행과 같음</u>)
③ <u>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u>	③ <u>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u>	③ (<u>현행과 같음</u>)

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⑤ (생략) <u><신설></u>	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u><신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
--	---	---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u> 등록할 수 있다. 1. <u>동일한</u>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만으로 구성되었을 것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u>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u>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u><신설></u>	----- ----- <u>공정거래위원회에</u> ----- ----- -----. 1. <u>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동일한</u> ----- 2. (생략) ② ----- ----- ----- <u>공정거래위원회에</u> ----- -----. 1. ~ 6. (생략) ③ <u>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u>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u> -----. ④·⑤ (생략) <u>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